

2004. 1. 31(토)  
제97회임시회제2차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라. 수정주요내용

- 안 “제3항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가. 법적검토

- 제천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기적의 도서관프로젝트에 따라 어린이 전용도서관건립기본계약서 제4조(도서관 건립책임) “갑”(재단법인 책임는사회문화재단)은“을”(제천시)이 제공한 대지에 도서관을 건립(설계·시공·내부공사·기자재·자료확보 등)하여야 하며 완공 후“을”에게 기부체납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은 기부체납이후부터 제천시 행정재산(시립도서관의 일부)이 되므로 별도의 규정에 없는 한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109조 2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제4조,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위탁관리)에 시장은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법인과 기타 공고에 의거 희망한 개인 및 독지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인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법규적 하자는 발견치 못함.

### 나. 행정적 검토

- 제천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 3항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위탁관리)에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과 기타 공고에 의하여 희망한 개인 및 독지가의 범위내에서 기준이 선정 되어야 할 것이며, 재단법인 책임는사회문화재단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검토

○ 위탁안 4항 위탁기간 및 범위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꼭 2년으로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어린이도서관을 위탁하고자할 때는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였는지 보아야 할 것이며
-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운영실태 즉 민간위탁의 성공사례를 적용하고 문제점 파악보완하고 새로 건립되는 타지치단체의 어린이도서관 관리의 운영 사례도 비교검토하고 앞으로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음. 특히 기존의 시립도서관(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인력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시 종합적인 검토로 경제적 부담, 공무원 조직과의 관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본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택하여야 할 것임.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동법제23조(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에 따른 국·도비등 지원에 불이익은 없는지 등이 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 수탁과 선정 및 위탁계약시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0조 도서관의 업무등 공공 도서관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 학계등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제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어린이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철회되었으므로 시립도서관조례를 개정 어린이도서관이 명시되어야 민간위탁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지 않아 생각되며, 시립도서관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 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이 상호 연계성이 있고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최창규 위원)
- 위탁계획안 제3항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꼭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명문화해야만 했는지(최창규 위원)
- 우리시 에서도 그 정도의 실력이 상당히 있는데 제천어린이도서관을 위탁하려는 뜻은, 위탁을 해야 만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시에서 직영 하려면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김기상 위원)
- 집행부에서 도서관조례하고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철자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조례안을 철회한 주요이유는(김기상, 윤성열 위원장)
- 현 상태에서 국가가 승인을 안해 줄 때에는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김기상 위원)
-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장1명, 직원3명, 일용직 1명해서 5명이고 인건비구성을 비교분석해서 소요예산을 심의했는데 관장은 사서직 인지? (김기상 위원)
-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있는지, 책읽는 사회에서 하고 있는지(이동수 위원)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되고 행정재산으로 명명백백하게 등재한 후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추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탁경영을 하려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한 사례가 있는지, 학계나 시민의견 수렴한 사례가 있는지(김진학 위원)
  -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을 깨달아서 가는 것이 오늘회의의 목적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면 추진이 되는지 (김진학 위원)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책임는사회문화재단이 기부 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서가 종결이 되었는지(김성진 위원)
  - 운영위원들의 자격요건은 뭐고 앞으로 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역할은 (김성진 위원)
  - 주요골자에 보면 위탁신청대상자를 보면 결과적으로 제천시하고 재단 법인 책임는사회문화재단하고 사전에 준공이 되면은 당신들한테 위탁을 하겠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탁을 주시오 하는 제천시와 책임는 문화재단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해볼려고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철회를 했고 민간위탁계획안으로 가는 것인 아닌가 생각하는데(유영화 위원)
  - 회신도 안왔다면 이 사람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천시에서 위탁 주는 건지, 현대 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향후에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유영화 위원)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가지고 제천시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5명을 채용하고 인건비 달라면 어떻게 할건지(유영화 위원)
- 나. 답변요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3항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됨.

- 당시는 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할 때에 그 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었음. 처음설립단계부터 뜻을 같이 했어 명문화를 시켰음.
-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문화관광과에서 업무협조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업무가 그리 넘어갔다 해서 조례도 그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인데 혼선을 드린 점 잘못됐다고 생각됨.  
업무가 아직까지도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미숙하고 도서관에 조례를 만들고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 것 책임 각오 (이두호 국장)
-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된다면 지원이 불가능함.
- 관장은 전문직 라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직급에서 사서직 이라고 안 함.
- 건립추진부터 했기 때문에
-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수렴한 조사자료는 없지만 민간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처음에 추진할 때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쪽이 가장 잘 끝나갈 수 있는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 서류는 다되어 있고 보존등기만 내일쯤 나는 걸로 알고 있음.
- 위원들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기타 시민사회단체등 각계인사로 자격요건이 되어 있고,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세부협약서 하고 2003년도 11월달에 간담회자료에 저희들이 어떤 적합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공문에 대해서는
-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음. 개정하겠음.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인건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도 기준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 본 위탁계획안 제3항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도서관과 관련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 한 것은 어느 특정 법인·단체로 한정되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본 위탁 계획안에서 삭제요청

## 7. 심사결과

- 김기상 위원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7명으로 수정가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1부